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 및 정리하고,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사유에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의 추가(안 제5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관련사항을 추가함

나. 배출시설 허가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관련 서식인 설치허가신청서, 설치허가증, 관리카드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및 첨부서류 안내 사항에 악취저감에 관한 서류 추가

다.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조문 정리(안 제12조의3)

법률 개정으로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 규정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제15조의2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15조, 제28조)

-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7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4조, 제16조, 제29조)
-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바.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조문 정리(안 제17조)
-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5항에서 제27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조문 정리(안 제36조)
- 법률 개정으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 규정이 법 제34조제7항에서 제34조제8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문 정리(안 제30조)
- 가축분뇨 관련업 허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수하여야”를 “보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취하여야”를 “채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취하여야”를 “채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날로”를 “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를 “신청서에(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34조제6항”을 “법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1) 위반사항란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1호	경고	처리금 지명령 1개월	처리금 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2호	경고	처리금 지명령 1개월	처리금 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3호	경고	처리금 지명령 1개월	처리금 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4호	경고	처리금 지명령 1개월	처리금 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별표 7 제2호다목7) 위반사항란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라목6) 위반사항란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7) 위반사항란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9) 위반사항란 중 “법 제34조제6항”을 “법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인란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설치허가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	------	-------------------------------------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착공 예정일(착공일)		⑧ 준공 예정일(준공일)							
	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⑪ 사용 용수량(㎡/일)		⑫ 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 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 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 고번호	소재지
⑭ 악취 저감 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⑮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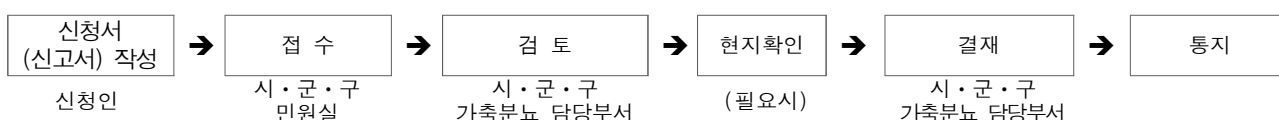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악취 저감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성방법

- 첨부서류 작성요령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최종오니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 ⑨,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젓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 ⑨,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 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가축종류	종류	업체명	처리 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위탁량 (㎡/일)
악취 저감 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허가조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소유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설 치 장 소							
시공사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완공일			준공검사일					
관리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오니처리방법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예상배출량(㎡/일)			
처리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위탁처리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일)	업체명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처리공정 및 시설개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u>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u>법 제15조의2제2항</u>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u>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u>법 제1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u> <u>오</u>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u>법 제15조의2제3항</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 ----- ----- ----- ----- ----- 제 <u>출해야</u> ----.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

1. -----

----- 보수해야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③ -----

----- 채취
해야 -----.

④ -----

----- 의뢰해야 -----

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

----- 통보해야
-----.

⑤ -----

----- 법
제17조제5항-----
-----.

⑥ -----

----- 않도록 -----

----- 해야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 제출해야 -----.

② ----- 채취해야 -----.

③ ----- 의뢰해야 -----.

--- 날 ----- 통보해야 -----.

④ -----

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제5항-----
-----.

제17조(행정처분기준) -----
--- 제27조제6항-----

-----.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

----- 제출해
야 -----.

② -----

----- 확
인해야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③ -----

----- 않은 -----
----- 법 제27조제5항-----
-----.

④ 법 제27조제7항-----

-----.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

-----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

<u>제21조제1항</u>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u>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u>하여야</u> 한다. 1. 2.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u>발급하여야</u> 한다.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u>법 제34조제6항</u>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u>제36조제1항</u>----- ----- ----- <u>확인해야</u> ----- ---. ----- --- <u>않는</u> ----- ----- ----- <u>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③ ----- ----- ----- --- <u>발급해야</u> -----.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u>법 제34조제8항</u>--- ----- -----.
--	--